◉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174호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전시 실시횟수) ①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1 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해당 문화시설이 전시를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있다.
- ③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④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⑤ 영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조(기여도 산정방법) ①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공연·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란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말하며, 각색·번역된 작품에서는 각색·번역을 창작으로 본다.

- ②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창작"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이상일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공연 작품의 창작자 또는 전시 작가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2.전시 작품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4조(비율 산정방법) 영 제23조제3항 제4호의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일것"이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공연·전시 등의 제작, 기획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2. 공연·전시 등의 기술지원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3. 공연·전시 등의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일 것
- 4. 공연·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제5조(실적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장에게 공연・전시

등의 실시 실적과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적통계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장이 제출한 실적의 종합적인 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년 05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174호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12.21 시행)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 23조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국 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 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정기 공연·전시 정기실시 실적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실적공 개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장애인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 화예술과

ㅇ 전자우편 : rieux@korea.kr

ㅇ 팩스: 044-203-35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전화 044-203-2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